

日本社会福祉学会会員 自由発表

家族法における子どもの出生上の法的地位

姜恩和 (Eun-Hwa KANG, 日本国立精神保健研究所)

I. 問題関心と研究目的

2005年3月31日に行なわれた家族法改正は、父系中心的な家族制度を維持する上で根幹をなしてきた「戸主制度」が全面廃止されるなど、これまでの家族法改正よりもさらに抜本的な内容が盛り込まれるものであった。実際に施行されるのは2008年1月1日であり、現在は「戸主制度」の全面廃止に代る身分証明制について議論が続いている状況である。「戸主制度」の廃止により、もはやこれまでのような、子どもが父家あるいは母家に入って、戸主との関係の中で位置が確定するという構造はなくなる。このような変化は子どもに関わる政策に少なからずの影響を与えることが予想されるが、今後の展開を見据えるためには、これまでの家族法を分析する作業が欠かせない。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改正以前の家族法における子どもの出生上の法的地位を、特に植民地支配期における家族規範の歴史的展開との関連から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子どもの出生上の法的地位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てきたか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II. 研究方法

解放後の家族法を理解する上で、植民地支配期の影響を理解することは重要である。本研究では、植民地支配期における家族規範を分析するために、朝鮮総督府が朝鮮の慣習をどのように捉えていたかに重点を当てる。朝鮮総督府は、植民地支配期に朝鮮支配のために設置された最高機関として、朝鮮の慣習調査を土台としながら、朝鮮民事令や朝鮮戸籍令などの法条文を通して家族規範の形成に強力に関わった。したがって、朝鮮総督府が刊行した慣習調査に関する文献類や、朝鮮民事令、朝鮮戸籍令などの法条文を材料として、植民地支配期における家族規範の展開や子どもの出生上の法的地位について分析し、それが解放後の家族法にどのように受け継がれたかについて考察する。

III. 研究結果

1. 『慣習調査報告書』における子どもの地位

『慣習調査報告書』は、朝鮮独自の民法典の制定を主張した梅謙次郎の主導により、1908年5月から1910年9月まで続けられた慣習調査の結果がまとめられたものである。2年4

ヶ月間、当時の行政区域の全国 13 道にわたり、各道平均 2 地域から 5 地域ずつ合計 49 ケ所で調査が行なわれ、その結果は地域別に整理され、1910 年 12 月に『慣習調査報告書』としてまとめられた。その中に、子どもの出生上の地位に関して以下の四つの質問項目が含まれている。

111 問 子ノ入ルヘキ家如何

119 問 戸主及家族ハ同一ノ氏ヲ称スルカ

135 問 妻カ婚姻中ニ懐胎シタル子ハ之ヲ夫ノ子ト推定スルヤ否ヤ

136 問 私生子ニ関スル慣習如何

その中で 111 問の「子ノ入ルヘキ家如何」の質問を明治民法のそれと対比してみ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111 問	明治民法
①子ハ父ノ家ニ入ルヘキカ	第 733 条 1 項 子ハ父ノ家ニ入ル
②父ノ知レサル子ハ母ノ家ニ入ルヘキカ	2 項 父ノ知レサル子ハ母ノ家ニ入ル
③父母共ニ知レサル子ハ一家ヲ創立スルカ	3 項父母共ニ知レサル子ハ一家ヲ創立ス

この問いから、明治民法の条文がそのまま朝鮮の慣習を調べるための質問内容になっ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明治民法では子を嫡出子、庶子、私生子と分けており、その基準をもって朝鮮の慣習を調べたのである。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子は必ず父の家に入るべきものであり、庶子は妾腹子として当然父の家に入る者と、父の認知によって入る者がいる。私生子については、姦生子以外に「私生子」という称呼はなく、父の知れない私生子が母の家に入るべきか否かについての慣習も判明しない。しかし、子の認知を拒むことを恥辱とするため、父の判明しない子であってもその母の指定する者は大抵認知する。父の認知を受けられない子は、母の家で育つかもしくは捨て子となって収養子になる。

このような調査結果は、概ね子どもを嫡出子や庶子、私生子に分け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ため、民籍法や朝鮮民事令などを通して明治民法の規定がそのまま適用されることになる。以下では植民地支配期の法律が子どもの身分を確定していく過程を分析する。

2. 植民地支配期における子どもの地位の変化

1) 民籍法において

1909 年に制定された民籍法は日本の戸籍制度が導入される発端となったものである。そ

の第一条ノ二には、17 項目にわたる事項¹について 14 日以内に「本籍地所轄府尹又ハ面長ニ申告ス」とある。その中で出生の申告義務者は当該戸主となっている²。そして民籍法執行心得(1909. 3. 20 内部訓令第 39 号)の六に「出生別の欄にはその父を中心とし、該当する身位即ち長男、次男又は長女、次女と記載するが如し」と規定されており、この時点では子どもはその父を中心として、生まれた順番により記載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庶子という表現は「庶子の父母を記載する場合は、其嫡母の名を記載せず実母すなわち生母である妾の名を記載することを可とする」³とあるが、必ずしも子どもの出生欄と連動しているわけではなかった。この時期は子どもを嫡出子・庶子・私生子というように分けて記録す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ある。

2) 「民籍事務取扱ニ関スル件」と朝鮮民事令において

1915 年に政務総監名で出された「民籍事務取扱ニ関スル件」は、民籍法の内容をより詳細に規定したものである。そのうち「四 出生ニ関スル事項」では、子どもを嫡出子、庶子、私生子の三つに分けており、これを契機に韓国で私生子という名称が使われることになった。まずその内容は以下のような構成となっている。

- (1) 嫡出子ハ其ノ出生順ニ依リ長男(女)次男(女)ト記載スヘク庶子アルモ嫡出子ノ順位ニ影響セサルコト
- (2) 妾ノ生ミタル子ハ庶子トシ夫ヲ有セサル婦女ノ生ミタル子ハ私生子トシテ取扱フヘキコト
- (3) 男子十七歳未満女子十五歳未満ノ者ノ間ニ生レタル子ハ其ノ男女カ婚姻ノ式ヲ挙ケタル場合ト雖モ庶子トシテ取扱フヘキコト
- (4) 前項ノ場合ニ於テ庶子ノ父母カ後日婚姻ノ申告ヲ為シタルトキハ庶子ノ身位ヲ嫡出子ニ改メ出生別其ノ他関係事項ヲ訂正スヘキコト
- (5) 私生子ハ母ノ民籍ニ登録シ父ノ欄ヲ空欄トスヘキコト
- (6) 私生子ニ対スル認知ノ申告アリタルトキハ父ノ属スル家ノ民籍ニ庶子トシテ登録シ母ノ欄ニハ母ノ姓名ヲ記入シ其ノ事由ヲ事由欄ニ記載スヘキコト
- (7) 前項ノ登録ヲ為シタルトキ又ハ入籍済ノ通知ヲ受ケタルトキハ当該私生子ノ事由欄ニ其ノ事由ヲ記載シ母ノ家ノ民籍ヨリ之ヲ除クヘキコト
- (8) 庶子又ハ私生子ノ身位欄ニハ庶子男(女)又ハ私生子男(女)ト記載シ長男長女ト記

¹ その内容は「出生、死亡、戸主変更、婚姻、離婚、養子、罷養、分家、一家創立、入家、廃家、廃絶家再興、附籍、移居、改名」である。

² 民籍法(1909.3.6 法律 8 号)第 2 条の一「出生、死亡、戸主変更、分家、一家創立、廃家、廃絶家再興、改名及依拠ノ場合ニハ当該戸主」

³ 民籍法執行心得の五の備考

載スヘカラサルコト

2項には庶子と私生子についての定義も含まれ、それぞれどのように出生登録をすべきかについても細かく規定されている。嫡出子と庶子は父の家に、私生子は母の家に登録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第6項には認知に関しても規定されている。

その後1921年11月14日の朝鮮民事令の第1次改正により、明治民法の親権に関する条文(877条-899条)が、また1922年12月7日の第2次改正により庶子及私生子に関する条文(827-836条)が借用され、養子に関する規定を除き、親子に関する条文の根幹となる部分がほとんど借用された⁴。それにより、明治民法733條の「子ハ父ノ家ニ入ル 父ノ知レサル子ハ母ノ家ニ入ル 父母共ニ知レサル子ハ一家ヲ創立ス」という原則が実質的に朝鮮にも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

IV. 結論

庶子・私生子という用語は1942年2月19日に「嫡出ではない子」に改正され、法律上では庶子・私生子は姿を消した⁵。もちろん解放後もその用語は使われていない。しかし実際には明治民法第733条と非常に類似した内容の条文が、1958年の家族法制定の際に規定されることになる。

民法第781条(子の入籍、姓と本)

- 1項 子は父の姓と本にしたがい、父家に入籍する。
- 2項 父を知らない場合、子は母の姓と本にしたがい、母家に入籍する。
- 3項 父母を知らない子は法院(裁判所)の許可を得て姓と本を創設し、一家を創立する。しかし姓と本を創設した後父あるいは母を知った際には、父または母の姓と本にしたがう。

このように、姓と本の部分を除けばほとんど明治民法の条文がそのまま生き残っているのは、植民地支配期における慣習と明治民法との錯綜により、父系中心的な家族制度がさらに強化され、それが解放後も伝統として生き残ったことに大きく起因するといえる。このような子どもの出生上の法的地位が子どもの処遇に及ぼした影響は、養子縁組される子どもの多くが未婚母の子どもであるということに著しく表れている。つまり、父親の認知を得られない婚外子の場合、母家に入籍し母親の姓を名乗ることになるが、このことは

⁴ ただ、日本では庶子が父の家に入るときや私生子が母の家に入るとき両方とも戸主の同意を要するのに対し、朝鮮では私生子のみに戸主の同意を要するとした。(朝鮮戸籍例規：大正12年7月19日京城地方法院長問合同年8月23日法務局長回答)

⁵ 朝鮮総督府官報(1942.2.19)

子どもが父親の姓を継ぐのが通常となっている中で非常に異質的なものとして受け止められやすく、未婚母の子どもは養子に出されることが多いのである。

しかし、2005年3月31日の家族法改正により、母の姓にしたがうことの異質さはこれから和らぐと思われる。さらに、子どもが「戸」の中に入れられるのではなく、個人を主体とする身分証明制度が導入されることにより、子どもの処遇に親の婚姻状態が及ぼす影響にも変化が生じることが予想される。今後も家族法改正を視野に入れつつ、これまでの家族法における子ども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さらなる研究が必要であろう。

【主要参考文献】

●日本の文献

- 青山道夫. 1937. 「私生子認知」. 穂積重遠、中川善之助責任編輯. 『家族制度全集 法律編 III 親子』. 河出書房. pp. 107-148.
- 鄭鐘休. 1989. 『韓国民法典の比較法的研究』. 創文社.
- 福島正夫・利谷信義. 1996. 「明治前期における戸籍制度の発展」. 『福島正夫著作集 第二卷 家族』. 勁草書房. pp. 3-56.
- 高柳真三. 1987. 「私生子の出現」. 『明治前期家族法の新装』. 有斐閣. pp. 219-239.
- 梅謙次郎. 1909. 「韓国の法律制度について(上)」. 『東京経済雑誌』, 1512号, pp. 701-703.
- 梅謙次郎. 1909. 「韓国の法律制度について(下)」. 『東京経済雑誌』, 1514号, pp. 793-796.

・朝鮮総督府編の文献

- 朝鮮総督府. 1913. 『慣習調査報告書』.
- 朝鮮総督府法務局内朝鮮司法協会. 1929. 『改訂朝鮮戸籍例規』朝鮮総督府法務局編纂.
- 朝鮮総督府. 1933. 『民事慣習回答彙集』. 朝鮮総督府中枢院.
- 朝鮮総督府. 1938.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 朝鮮総督府中枢院.

・官報類

- 官報付録 1905. 5. 29. 法律第 21 号刑法大全. 『旧韓国官報』. 亜細亜文化社. 1973.
- 朝鮮総督府官報号外 1912. 3. 23. 「制令 7 号—朝鮮民事令」. 亜細亜文化社. 1985.
- 朝鮮総督府官報第 904 号. 1915. 8. 7. 「官牒第 240 号」. 亜細亜文化社. 1985.
- 朝鮮総督府官報. 1942. 2. 19.

・法令類

- 民籍法 1909. 3. 6. 法律 8 号
- 民籍法執行心得 1908. 3. 20. 内部訓令第 39 号.
- 民籍法執行心得改正 1915. 8. 総訓第 47 号.
- 朝鮮民事令 1912. 3. 18. 制令 7 号.

朝鮮民事令改正 1922. 12. 7. 制令第 13 号.

朝鮮戸籍令 1922. 12. 18. 府令第 154 号.

● 韓国の文献

배태순(ベテスン). 2002. 「국내입양과 입양법 및 아동복지법」(国内養子縁組と養子縁組法および児童福祉法). 허남순·문선화·김현용(ホナンスン·ムンソンファ·김현용) . 『韓国の児童福祉法』. 小花. pp. 189-234.

金斗憲(キムドゥホン). 『韓国家族制度研究』. 서울(ソウル)大学校出版部.

朴秉濠(パクビョンホ). 1996. 『家族法論集』. 도서출판 진원(圖書出版ジンウォン).

朴秉濠. 1992. 「日帝下家族政策의 慣習法形成過程」

(日帝下家族政策の 慣習法形成過程). 『서울大学法学』, 33, pp. 1-16.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원 자유발표

가족법에 있어서의 아동 출생상의 법적지위

姜恩和 (Eun-Hwa KANG, 日本国立精神保健研究所)

I. 문제관심과 연구목적

2005년 3월 31일에 부계중심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어왔던 호주제도가 전면폐지되는 등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본격적인 가족법개정이 실시되었다. 개정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호주제도의 전면폐지에 대신할 신분증명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제도의 폐지로 인해, 이제까지와 같이 아동이 父家나 母家に 들어가 호주와의 관계 속에 위치가 확정되는 구조는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가족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되기 이전 가족법에 있어서 아동의 출생상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특히 식민지배기의 가족규범의 역사적 전개와의 관련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아동의 출생상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해방후의 가족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배기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배기의 가족규범을 분석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관습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주목한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관습조사를 토대로 삼아 조선민사령과 조선후적령 등의 법조문을 통해서 가족규범의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관습조사에 관한 문헌류와 조선민사령, 조선후적령 등의 법조문을 재료로 식민지배기에 있어서의 가족규범의 전개와 아동의 출생상의 법적지위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이 해방후의 가족법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III. 연구결과

1. 『관습조사보고서』에 있어서의 아동의 지위

『관습조사보고서』는 조선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제정하려고 했던 우메켄지로(梅謙次郎)의 주도아래 1908년 5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시행된 관습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의 행정구역이었던 전국 13 도에 걸쳐서 각도별로 평균 2 지역에서 5 지역까지 합계 49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1910년 12월에 『관습조사보고서』로 간행된 것이다. 그 중에 아동의 출생상의 지위에 관한 4가지의 질문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1 문 아동이 소속되어야 할 家는 어디인가
- 119 문 호주와 가족은 같은 씨를 칭하는가
- 135 문 처가 혼인중에 회입한 자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가
- 136 문 사생자에 관한 관습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111 문의 내용을 명치민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11 문	명치민법
①자는 부의 家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제 733 조 1 항 자는 부의 家에 소속되어야 한다
②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모의 家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2 항 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모의 家에 소속되어야 한다
③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는 一家를 창립하는가	3 항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는 一家를 창립한다

이런 질문내용을 통해, 명치민법의 조문이 그대로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기 위한 잣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명치민법에서는 자를 적출자, 서자, 사생자로 구분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조선의 관습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자는 반드시 부의 家에 소속이 되어야 하고, 서자는 첩복자로서 당연히 부의 家에 소속되는 자와, 부의 인지를 받고 소속되는 자가 있다. 사생자에 대해서는 간생자(姦生子)이외에 ‘사생자’라는 호칭은 없고, 부를 알지 못하는 사생자가 모의 家에 소속되는 지에 대해서도 관습이 뚜렷하게 판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부가 판명되지 않은 자라도 그 모가 지정하는 자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인정한다. 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母家에서 자라거나 또는 버려져서 수양자가 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동을 적출자와 서자, 사생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후 민적법과 조선민사령 등을 통해서 명치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차용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식민지배기의 법규정이 아동의 신분을 확정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2. 식민지배기에 있어서의 아동 지위의 변화

1) 민적법(民籍法)에 있어서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은 일본의 호적제도가 도입되는 발단이 된 것이었다.

제 1 조 2 에서는 17 항목에 이르는 사항⁶에 있어서 14 일 이내에 “본적지관할府尹이나 면장에 신고한다”고 되어있다. 그 중에서 출생신고의무자는 해당 호주로 규정되어 있다⁷. 그리고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 · 1909. 3. 20 내부훈령제 39 호)의 6 에 “출생별에는 부를 중심으로 하고 해당하는 身位 즉 장남, 차남 또는 장녀, 차녀로 기재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시점에서는 아동은 부를 중심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서자라는 표현은 “서자의 부모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적모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실모 즉 생모인 첩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⁸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동의 출생란에 서자로 기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을 적출자 · 서자 · 사생자로 분리해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이다.

2)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 과 조선민사령에 있어서

1915 년에 정무총감령으로 시행된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에는 민적법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중 ‘四 출생에 관한 사항’에는 아동을 적출자, 서자, 사생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생자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적출자는 그 출생순서에 따라서 장남(여) 차남(여)로 기재하고 서자가 있어도 적출자의 순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2) 첩에게서 태어난 자를 서자로 하고 남편이 없는 부녀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생자로 한다
- (3) 남자 17 세미만 여자 15 세미만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그 남녀가 혼인식을 올릴 경우라고 해도 서자로 취급한다
-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자의 부모가 후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자의 신분을 적출자로 바꾸어 출생별과 그 외의 관계사항을 정정한다
- (5) 사생자는 모의 민적에 등록하고 부는 기재하지 않고 비워둔다
- (6) 사생자에 대한 인지를 신고할 때는 부가 속하는 家의 민적에 서자로 등록하고 모의 란에는 모의 성명을 기입하고 그 사유를 사유란에 기재한다
- (7) 전항의 등록을 하거나 또는 입적 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생자의 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母家의 민적에서 사생자를 삭제한다

⁶ 그 내용은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附籍, 이주, 개명”이다.

⁷ 민적법(1909.3.6 법률 제 8 호)제 2 조의 1 “출생, 사망, 호주변경, 분가, 일가창립, 폐가, 폐절가재흥, 개명 또는 의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주”

⁸ 민적법집행심득의 5 의 비교

(8) 서자 또는 사생자의 신분란에는 서자 남(여) 또는 사생자 남(여)로 기재하고 장남장녀로는 기재하지 못한다

2 항에는 서자와 사생자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각각 어떻게 출생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적출자와 서자는 父家에, 사생자는 母家에 등록되게 되어 있고 제 6 항에는 인지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그 후 1921년 11월 14일에 조선민사령 제 1차 개정을 통해, 명치민법의 친권에 관한 조문(877조-899조)이 차용되고, 이어서 1922년 12월 7일 제 2차 개정을 통해 서자와 사생자에 관한 조문(827-836조)가 차용되어, 양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친자에 관한 조문이 대부분 적용되었다⁹. 그로 인해, 명치민법 733조의 “자는 父家에 들어간다. 부를 알지 못하는 자는 母家에 들어간다.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일가를 창립한다.” 라는 원칙이 실질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다.

IV. 결론

서자·사생자라는 용어는 1942년 2월 19일에 ‘적출이 아닌 자’로 개정되어 법률상으로는 서자·사생자는 사라지게 되었다¹⁰. 물론 해방후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치민법 제 733조와 매우 흡사한 내용의 조문이 1958년 가족법 제정시에 규정되게 된다.

민법 제 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 ① 子は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 ③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創設한 後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성과 본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명치민법의 조문이 대부분 남아있는데, 이는 식민지배기에 있어서 관습과 명치민법의 착종이 부계중심적인 가족제도의 강화를 야기하고, 그것이 해방후에도 전통으로 남게 된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출생상의 법적지위가 아동의 처우에 미친 영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이다. 부친의 인지를 받지 못한

⁹ 다만, 일본에서는 서자가 부가에 들어갈 때와 사생자가 모가에 들어갈 경우 호주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생자만 호주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조선후적예규:1923년 7월 19일 경성지방법원장문의 동년 8월 23일 법무국장회답)

¹⁰ 조선총독부관보(1942.2.19)

혼외자의 경우, 母家에 입적하고 모친의 성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이 부친의 성을 이어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 31일의 가족법개정으로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감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이 ‘戶’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을 주체로 한 신분증명제도가 도입됨을 통해서, 부모의 혼인상태가 아동의 처우에 끼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가족법개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가족법에 있어서 아동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폭넓게 연구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요참고문헌】

● 일본의 문헌

青山道夫. 1937. 「私生子認知」. 穂積重遠、中川善之助責任編輯. 『家族制度全集 法律編 III 親子』. 河出書房. pp. 107-148.

鄭鐘休. 1989. 『韓国民法典의 比較法的研究』. 創文社.

福島正夫・利谷信義. 1996. 「明治前期에 있어서의 戶籍制度の發展」. 『福島正夫著作集 第二卷家族』. 勁草書房. pp. 3-56.

高柳真三. 1987. 「私生子의 出現」. 『明治前期家族法の 新装』. 有斐閣. pp. 219-239.

梅謙次郎. 1909. 「韓國の法律制度에 대해서(상)」. 『東京經濟雜誌』, 1512号, pp. 701-703

梅謙次郎. 1909. 「韓國の法律制度에 대해서(하)」. 『東京經濟雜誌』, 1514号, pp. 793-796

・朝鮮總督府編の文献

朝鮮總督府. 1913. 『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法務局內朝鮮司法協會. 1929. 『改訂朝鮮戶籍例規』朝鮮總督府法務局編纂.

朝鮮總督府. 1933. 『民事慣習回答彙集』.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總督府. 1938.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 朝鮮總督府中樞院.

・官報類

官報付録 1905. 5. 29. 法律第 21 号刑法大全. 『旧韓國官報』. 亜細亜文化社. 1973.

朝鮮總督府官報号外 1912. 3. 23. 「制令 7 号—朝鮮民事令」. 亜細亜文化社. 1985.

朝鮮總督府官報第 904 号. 1915. 8. 7. 「官牒第 240 号」. 亜細亜文化社. 1985.

朝鮮總督府官報. 1942. 2. 19.

・法令類

民籍法 1909. 3. 6. 法律 8 号

民籍法執行心得 1908. 3. 20. 内部訓令第 39 号.

民籍法執行心得改正 1915. 8. 總訓第 47 号.

朝鮮民事令 1912. 3. 18. 制令 7 号.

朝鮮民事令改正 1922. 12. 7. 制令第 13 号.

朝鮮戶籍令 1922. 12. 18. 府令第 154 号.

● 한국의 문헌

배태순. 2002. 「국내입양과 입양법 및 아동복지법」. 허남순·문선화·김현용.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pp. 189-234.

김두헌. 『韓国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병호. 1996. 『家族法論集』. 도서출판 진원.

박병호. 1992. 「日帝下家族政策의 慣習法形成過程」. 『서울대학법학』, 33, pp. 1-16.